

# 기안용지

분류번호 문서번호	주택 5-11-1/287 (10) 5.3.1.	(전화: 600-6380)	기안일 1989.3.10
보조기관	부구청장	회 조 기 관  1989.3.10 76	문서통제
신청처 보통기관	도시정비국장		검인 1989.3.06
시행일자	89.3.1		주택과장
보조기관	이은기	발신명의	1989.3.10 76
성명 수신 장소	과안참조	1989.3.10 76	1989.3.10 76
제목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제 1안 내무부제			
1. 기음작도 부의 제출된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입니다.			
2. 신청인			
원본대조함 원본은 강서구청 주택과에 보관 지방행정서기 장호상	(주) 태근건설 대표 사공관	고시공고 1989.3.10 76	
3. 신청 내용			
(1) 위치 : 관내 화곡동 산 63번지			
(2) 건립 규모 : 연립주택 3층 2동 60세대			
(3) 지목 및 면적 : 임야 3,074㎡			

(4) 용도지역및 지구: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고도지구

(5) 작업 기한: '89. 2. - 3. 10. 30

2. 상기 신청지의 입지심역은 주택 30411-12.5(88. 5. 7)호에

외기 적합도로 증포된 지역으로 본 사업계획 신청내용은 주관 부서별로 검토한  
바 주택건설 촉진법및 관계 법령이 적합하다고 판단 되었으므로 주택건설 촉진  
법 제 33조의 규정에 외기 승인처리하오니 합니다.

첨부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서 1부 끝.

제 2안

수신 강서구 학곡동 636-1 (주)태근건설 대표 시공권

제목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1. 귀하가 제출하신 강서구 학곡동 산 63번지의 민영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외기 승인하오니 별첨 사  
업 계획 승인서및 세반 심계도시대로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2. 입주처 모집은 3층 스카프 공사가 완료된 이상과 공정에 도달합시  
공고승인을 득하여 인간신문에 공고후 모집토록 할것이며,

3. 승인한 심계도시및 승인 조건을 위반합시 주택건설 촉진법 제 4조  
등 관계규정에 외기 공사중적및 등록취소등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되오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4.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외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별도

추가 조건을 부활 했어오니 양지 하시게 바랍니다.

첨부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서 1부 끝.

제 3안

수신 서울특별시

참조 주택기획과장

제목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결과 보고

1. 우이동 권내 다음자로 부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 사항을 점검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신청인

(주) 대군건설 대표 사공관

나. 승인 내용

(1) 위 치 : 경식구 학곡동 산 63번지

(2) 규 모 : 민영주택 3층 2동 60세대

(3) 사업 기간 : '69. 2 - '69. 10. 30

첨부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결과보고 2부 끝.

제 4안

수신 서울특별시청

참고 공 도 관

제목 시보 제정 및

서울특별시 광역구 화곡동 산 63번지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

청이 있어 이를 승인하고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하고자 의뢰 받으오니, 별첨 고시안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고시안 1부 끝.

책 5안

수신 수신처 김소

제목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사항 통보

1. 주택 30411-732(E9, 2, 15)호와 관련임.

2. 관내 화곡동 산 63번지의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사항을 통

보 하녀 제반 설계도서 및 승인조건에 직합하게 시공보통 감독에 철저를 기함것

첨부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서 1부 끝.

수신처 : 도시정비과장, 지구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산업과장

환경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수도공사과장, 화곡 5동장

주박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서

승인  
번호

89-1

사업주체	상 호	(주)대박건설		등록번호	84-556	
	대표기	사공관	영업소재지	강서구 화곡동 836-1		
심게자	성명	박영식	자격	건축사		
	주소	양신구 산성동 577의 7번지				
공사 시공자	성명	자 격				
	주소					
사업 계획	사업위치	강서구 화곡동 산 3		용도 지역	주거지역, 주차장정비 지구, 고도지구	
	사업내용	대지면적	건축면적	주택형범	규모	사업비
		3,077㎡	4,100.30㎡	연립주택 (3층)	동 30세대	1,939,000 천원
	사업기간	착공 예정일차			준공 예정일차	
89. 10. 30			89. 10. 30			
승인조건	별첨					

주박건설 육진법 제 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규정

에 의하여 주박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함.

1989년

월

일

강 서 구 청 장

구분	충원대역				비고		
건설의지	경석군 화곡동 산 63번지						
사업자명	(주)대근건설 대표 사공관		지공회사명				
공모	주요공용	연면적, <b>전면주택</b> 1세대주택, 단독주택					
	층수	지하 : 1층		지상 : 3층		층수 : 4층	
	간격	앞면	강남면적	건공면적	면적(m <sup>2</sup> )	세대수	
		20.90m	32.65	46.44	69.12	36	
		16.44m	19.32	36.36	55.78	6	
		19.02m	21.12	41.76	62.88	9	
		24.25m	25.47	54.81	80.8	3	
22.81m		24.25	51.16	75.41	3		
17.64m	19.98	38.24	57.32	3			
공공면적	연면적 : 60.000		조각 : 세대		세대 : 세대		
면적 (m <sup>2</sup> )	연면적 : 3,074.00		건축면적 : 1,012.30m <sup>2</sup>		연면적 : 4,030.30		
건축비용	건축비용 : 32,500		공사비 : 96,300				
사업비 (건당)	1,200,000						
사업기간	89. 2. 10. - 89. 10. 30						
부대 시설	구분	설치개소	면적 (m <sup>2</sup> )	구분	설치개소	면적 (m <sup>2</sup> )	
	권리자명	1	16.74	판매시설			
	용도명			공용시설			
	건물명			주차장			
	계획명			비밀저장소	1	72	
노면명			이전시설	1	168		
기타사항	비고						

사업위치 : 강서구 위곡동 산 12번지

1. 착공전 관계측인 측량(지적공사직행) 및 철사하이 인입방개를 사업시행도  
록 함 것.
2. 착공시 수공기를 제출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당구(분야명)공사 감독 원의  
감독을 받음 것.
3. 준공검사는 제출되는 공성번호, 공사전, 중, 완료수전 및 최종 준공도(지  
적공사 시행)를 첨부함 것.
4. 사업시작 승인 후 3미터의 표시개입노출은 준공전까지 표장원(표)를 함 것이며,  
사업지는 임의대로 농작물신학이 준공후 30일이내 철거 및 정정함 것.
5. 상기도도 역학, 측량, 지적 및 측량 구간(추진인 노선)의 기준 노선은 준  
공전까지 완료함 것.
6. 사업시행으로 발생된 사도야 대하여는 착공 신고서 그야야 개회시를 협의 함  
이며, 준공검사전 제출시에 저역층 방식을 첨부함 것.
7. 착공 10일전까지 당구(완경역)에 비산농원, 농장원, 산지산(산경장, 교시  
57-4호)를 함 것이며, 임공급 사업의 시간당 10만 Kcal 이상과 지질일 경우  
매출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 함 것.

8. 도시가스 공급은 순공식 가능방법 간 계약 등에 준하여 시공하고 인화 가스 안전공식의 안전감시법 특인 것.
9. 상수도관은 하국도에 부속되어 있는 송수관에서 사업지까지 연평타 2상수 관 배관의 모든 배수상기계를 적용한 것이며 당국의 기준정도 함 받아 상하 주도 선공임기를 선정하여 시공할 것.
10. 각종 시설은 등록업자와 상선한 규격제품을 적용할 것.
11. 건축공사는 기술시험 및 용역공식 완료후 착공할 것.

유 의 사 항

1.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당국와 협의하여 당국과 복가당당하여 야 함.
2. 임용된 자는 공사의 작도에 의한 손해액 (2,000,000원)은 시공 완료후에 원상방.
3.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주택가의 민원이 없도록 사전사항에 관념유 의할 것.



석유특별유류세율 개정 116 호

유류특별세율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비양주에 건설 사업  
계좌를 승인하고 특별 세율법 제 33조 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함이다.

1964년 12월 31일

석 유 특 별 유 류 세 율 개 정

다. 유 류 세 율

- 1. 석 유 세 율 : 비양주에 건설 사업 계좌 승인 후
- 2. 석 유 세 율 : (수) 비양주 건설 사업 계좌 승인 후
- 3. 석 유 특별세율의 최저 승인된 범위 규모
- 가. 면 적 : 석유특별유류세율 개정규정 제 33조 5의 규정에  
따라 건설 : 5,000 제곱미터 이하
- 나. 고 목 : 20미터 이하
- 4. 석 유 특별세율 : 10%, 20%, 30%, 40%